

2021년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(지역소재기업 특화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) 2차 모집공고

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구미시 내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종사 기업과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업들의 제품개발, 혁신산업 육성,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‘지역 특성화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06월 08일

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구미 내 특화기업들의 특화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핵심 기관,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우수한 기술 역량 및 자원을 연계하여, 특화기업 수요 중심의 상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강소특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도모함

□ 사업예산 : 총 675,000천원

□ 지원방법 : 바우처 지원

- 바우처 :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,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

□ 신청기간 : 2021.06.08.(화) ~ 06.25.(금)

- 온라인 접수(담당자 이메일 접수)

□ 지원규모 : 7개 내외 과제 선정(과제별 최대 45,000천원 이내 지원)

- 산학공동 기술상용화 지원

□ 지원대상

- 기술핵심기관 연구자와 공동기술개발(컨소시엄) 진행가능 기업
- 지원대상 범위(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
- ② 경북 구미 소재 기업 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제품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- ③ 구미소재 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
 -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기술이전 수행 기업
 -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R&BD 지원사업 수행 기업
 - 기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특구육성사업 수혜 기업

- 우대사항

- ① 5G+(28GHz) 관련 기술 보유기업
- ② 5G+(28GHz)망을 활용한 실증 연구개발 가능 기업

- 지원제외 대상

- ①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
- ②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③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부도 또는 휴·폐업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) 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
□ 지원내용

- 기술핵심기관 우수 연구자와 기업 수요기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상용화 지원
- 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우선 지원,[붙임 3] 참고
- 수요 및 가치사슬 연계, 공공기술이전기업 우대
- 상세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
기술개발 및 상용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의 니즈 및 시장 니즈 등 분석을 통해 기업과 전문 연구인력을 1:1 매칭하여 선정기업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•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R&D 지원 • 지원 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 수행 관리를 통한 과제 수행의 애로사항 점검 및 해소 진행

*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과제 참여에 따른 기업부담금
 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%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(기업부담금 없음)
 - (기술료 징수 관련)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사항 없음
- **기술개발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**
 - 선정된 과제 기술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(IP)출원 필수
 - 기타 기술개발 결과물 제출(시제품, 논문 등)

□ 선정평가 및 기준

구 분	배점	평가항목	비중(%)
제품개발의 필요성	20	• 제품개발의 필요성	10
		•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	10
사업수행의 적절성	30	•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	10
		•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	10
		• 추진체계의 적정성	10
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	30	•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	15
		•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	15
사업비 구성	10	•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10
기대효과	10	• 파급효과	10
가점	2	•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증 기업(인증서 필수)	-
	3	•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기업(인증서 필수)	
	2	•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기업	
	2	• 기술혁신형인증(이노비즈) 기업	
	5	• 공고일기준 1년내 기술핵심기관 공공기술 이전 기업(기술이전예정기업은 기술이전 협약서 별첨) * 기술이전 협약기업은 협약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	
합 계			100

※ 세부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(서면평가) 사업 수행 적정성(결격사유 유무) 확인 및 서류 검토
 - * 중복성 검토, 제재 여부 검토,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
- (대면평가)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
- (과제선정)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값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을 대상으로 선정
- 동점자 처리 기준
 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,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,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
 -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구 분	주요 내용	일시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(https://iacf.kumoh.ac.kr) 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 ■ 구미전자정보기술원(www.geri.re.kr) ■ 경상북도경제진흥원(www.gepa.kr) 	'21.06.08.~06.25.
↓		
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메일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박경태 주무관: gtpark@kumoh.ac.kr - 성상아 주무관: ssasera@kumoh.ac.kr 	'21.06.08.~06.25.
↓		
선정평가 및 결과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발표평가 ■ 평가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 	'21.07월 중
↓		
결과발표 및 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 선정 참여기관(기업) 통보 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■ 사업 협약 체결 	선정 기관별 별도 협약 체결 예정
↓		
과제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핵심기관 우수 연구자와 기업 수요기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상용화 지원 	협약일 ~ '22.01.31.
↓		
사업평가 및 회계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여기업 지원 결과보고 ■ 사업비 정산 ■ 기술개발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	'22.02월 중

□ **관련법령 및 규정**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 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 - 국가연구개발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 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
- ※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

□ **신청 및 문의**

-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
- 문의처 :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
(주소)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, 공동실험실습관 201호

담당자	직급	연락처	E-mail
이강현	팀장	054-478-6793	ghl@kumoh.ac.kr
박경태	주무관	054-478-6795	gtpark@kumoh.ac.kr
성상아	주무관	054-478-6796	ssasera@kumoh.ac.kr

□ **기타사항**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

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

- 사업선정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
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
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 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(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)에 응할 의무가 있음
 - ※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

□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제출

번호	제출서류	서식	비 고
1	사업신청서	서식 1호	신청기업
2	사업계획서	서식 1호	신청기업
3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
4	법인등기부등본 (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)	-	모든 기관 제출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)	-	모든 기관 제출
6	최근 3개년간 표준재무제표*/회계감사보고서 *국세청 홈텍스 발급분(원본확인필증)	-	모든 기관 제출
7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 *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	-	주관/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
8	의무이행서약서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9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서식 3호	모든 기관 제출
10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참여기관
11	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	서식 5호	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
12	연구윤리.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13	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 (홈페이지 검색 결과화면 캡처)	참고 1호	모든 기관 제출

**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smba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www.hpe.or.kr>)
- 주의사항 :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

□ 사업계획서 작성 · 등록 시 유의 사항

-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.
 -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, 참여연구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